

##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鄭 盤 石\*

### 경쟁라운드—또 하나의 다자간 협상

지난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 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7년 반을 끌어오던 다자간 협상이 일 단락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의 증대, 그리고 그를 통한 후생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을 위한 무역 장벽의 철폐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때, 이제 그러한 범세계적 자유 무역 여건을 보장하려는 또 다른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경쟁라운드(CR)라는 것으로서, 국가간 경쟁정책(혹은 독점금지정책)과 무역 정책의 상호 충돌 내지는 보완관계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공동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국가간에 발생하는 통상 문제

는 단순한 국경 장벽과 외국기업의 차별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거래 관행과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이행하게 되며, 통상협상의 이슈는 이러한 거래 관행의 차이를 무역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2차대전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국가간 경쟁 규범의 확립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위한 하바나 헌장의 제 5장에서 시도되었는데, 이의 규범화에는 실패하였지만 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RBP: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고 국제적인 논의에 상정했다는 의미를 주었다. 그후 UN의 UNCTAD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개도국의 독점금지법 입안에 있어서 기본 틀을 제공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제정책·산업조직 전공.

<표 1>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 내용

논의 범위	논의 결과	주요 내용 및 논의 대상	
다자간	UN	[(경쟁)제한적 영업관행 규제에 대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 설정, 입찰, 시장 분할, 생산 등의 담합, 부당한 거래 거절, 비용 이하의 가격 설정을 통한 약탈적 행위</li> <li>· 계열 기업과 비계열 기업의 부당한 차별 거래, 기업의 합병·인수 등의 기업 결합</li> </ul>
	GATT	[하바나 헌장] 제5장	· 가격 고정, 생산이나 구매에 있어서 시장 분할, 생산 쿼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OECD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 그 상호작용]에 기초한 각종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카르텔, 수출자율 규제, 정부 조달과 국영 무역, 상계관세와 덤핑 및 반덤핑 등 정부 정책</li> <li>· 다국적 기업의 배분·가격 조작 행위</li> </ul>
지역	EC	[로마조약] 제 85조, 86조, 92조,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간의 합의 내지는 사업자 단체에 의한 협조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li> <li>· 시장 왜곡적인 정부 보조금</li> </ul>
	NAFTA	[NAFTA 협정문] 1501조-15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경쟁정책을 위해 역내 국가간 상호 법률 지원, 통보, 자문, 정보 교환 협력</li> <li>· 역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독점기업 규제</li> </ul>
쌍무	미·일	미·일 구조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매점 신설 자유화, 경품 규제 완화</li> <li>· 배타적 거래 관행,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분야 축소, 담합입찰 규제</li> <li>· 계열 기업과 비계열 기업간의 불공정한 차별 대우 및 내부거래 규제</li> </ul>
	미·EC	독점금지법 적용에 관한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행위의 통보와 협력</li> <li>· 경쟁정책 관련 정보 제공과 협력 및 조정</li> </ul>
	미·독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협력 협정	· 조사, 제소, 경쟁정책 등에 대한 당국간의 협조, 정보 제공, 자문
	미·캐나다	독점금지법 적용에 관한 통보·협약의 협력에 관한 양해	· 제한적 거래 관행에 대한 정보의 제공, 경쟁정책 당국간의 협력

주 : 쌍무협상은 미국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인 기구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OECD였는데 이사회 산하에 경쟁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경쟁 제한적인 관행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상호 관련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에도 관심을 두어 다국적기업의 규제에 대한 공동의 규범 마련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EC의 경쟁규범 체계는 단순히 국가간의 기본 틀을 제안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비교적 명확한 개념 규정과 각종 규제 대상, 규제 조치 및 처벌 내역까지도 상세히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지역적인 논의나 쌍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공식적인 공동 규범 제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양국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차원의 협약에 불과하며 그 논의 내용도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협상을 통해서 경쟁정책에 변화를 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구조협의로써 유통 구조 개선, 계열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여타의 독점금지 정책의 강화 등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경쟁정책의 국가간 조화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의 무역, 특히 對日 수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는 일본의 기업 관행과 시장구조에 대한 일방적인 개선 요구로서 시장 개방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한 통상 협상의 한가지 수단에 불과하였다.

### 최근의 논의 동향과 전망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경쟁정책의 논의는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데, 이미 1992년 EC 집행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기존에 경쟁정책의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던 OECD에서는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작업과 규범 마련을 계속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오는 94년 6월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결실을 통하여 향후에 전개될 경쟁라운드 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내에서 독점금지법(Antitrust Act)의 운용을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의 주도하에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전개하려는 이른바 ‘클린턴 라운드’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자국의 독점 금지법을 통상압력 수단으로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역외적용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94년 5월에 들어서는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反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를 의회에서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 다자간 차원에서 경쟁정책이 국제 규범화할 수 있는 방향 및 전망은 첫째, WTO 체제 하에서 과거의 라운드 협상 방식으로 공동의 기본 규범을 확립하는 경우, 둘째, OECD 국가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WTO에서 다룰 협상의 기본 틀을 구성하거나, 최소한 OECD 회원국간에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틀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는 96년 OECD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현시점에서 그 논의 동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약 40여 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이다. 또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인 우선 순위와 시각의 차이, 그리고 경쟁법제의 기본 철학 및 개념과 집행 메카니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향후 WTO 체제하에서 경쟁라운드기간 내에 주요 성과를 이루기에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정책의 국가간 논의는 WTO 체제하에서의 광범위한 논의보다는, 그간에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온 OECD 내에서 향후의 논의 전개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전개 방향도 개도국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OECD 내의 국가 간에도 현재 상당한 시각 차이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의와 결론 도출의 용이성으로 인해 지역적이고 쌍무적인 논의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미국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력이 지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경쟁정책의 역사가 세계 경쟁정책의 역사라 할 만큼 미국의 경쟁법 체계는 가장 역사가 깊으며 독점 내지는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해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 쌍무적인 협상이 가장 시급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이 상호 보완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수출국의 무역정책적인 요구 사항으로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시장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접근이 유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은 주로 수입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수직 협정(vertical agreement), 수입 카르텔 등이다. 둘째, 수출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수입국의 무역정책적인 요구로서 수출기업의 불공정한 수출 행위에 대해 수출국에서 사전에 경쟁정책적인 규제를 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덤핑 수출과 수출 카르텔, 수출자율규제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이에 속한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APEC 내에서의 논의이다. 이 지역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논의는 미·일, 미·호주, 그리고 NAFTA 내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쌍무적인 차원의 협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93년 11월 APEC의 비전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경쟁정책의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역내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APEC 내에서의 논의는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선진국 위주의 기존의 논의가 주로 위의 前者의 입장에 무게가 놓여 있던 것을 감안하여 이제 後者의 입장에서 선진국에 反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의 남발을 문제 삼아서 이러한 조치들이 각국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유리한 것

은, 역내에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는 나라가<sup>1)</sup> 다수 존재하여 공동 전선을 펼 수 있으며 협의 대상 국가 수도 다자간 협상보다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쌍무적인 협상인데, 주요 상대국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통상마찰에서 볼 수 있듯이 쌍무적인 경쟁정책과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자국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시장에 대한 쌍무적인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공언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그 협상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미·일 구조협약에서 미국이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미경제협력회의 등의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의 한·미 협상에서도 경쟁정책과 관련한 요구 사항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적인 것<sup>2)</sup>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이드)에 대해서도 경쟁정책적인 접근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령 미·캐나다간 쌍무협상 과정에서 캐나다는 덤핑과 반덤핑 조치를 경쟁정책 측면의 문제로 다루자고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거부로 실패하였다.